2021년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422

2021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422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출일자 : 2021년 5월 25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5월 28일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1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경을 통해 20억원의 전입금 수입이 증가할 예정으로,

나.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여행업계 재도약 사업비 지원 활용을 위해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 내역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경(안)	증 감
계	2,002	4,002	2,000
전 입 금	2,000	4,000	2,000
이자수입	2	2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전	변경(안)	증 감
계		2,002	4,002	2,000
비 융 자 성 사 업 비		1,900	3,900	2,000
	긴급 생존자금 지원	1,500	3,500	2,000
	안심 mice 모델구축	400	400	-
기 본 경 비		10	10	-
여 유 자 금 예 치 금		92	92	-

○ 수입계획 변경 : 20억원 증가

- 전입금 : (당초) 20억원 → (변경) 40억원

○ 지출계획 변경 : 20억원 증가

- 비융자성 사업비 : (당초) 19억원 → (변경) 39억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조성 및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여행업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중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전출금 20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0년 10월 5일에 설치된 동 기금의 개요와 2021년도 계정별 지출 세부계획은 아래와 같음.

<관광진흥기금 개요>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사업관리기금)	•관광업계 지원, 서울관광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 추진 - '21년부터 매년 50억 규모로 사업관리기금을 편성하여 비융자사업 추진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적립성기금)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비, 개관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등 - 4년간('21~'24) 250억원씩 적립 ⇒ '24년 말 1,000억원 조성하여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비 등 마련

<관광긴급 지원계정 지출 세부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0년	2021년	증감	비교
합 계	0	2,002	2,002	
서울 관광·MICE업계 긴급 지원(비융자성 사업비)	0	1,900	1,900	
서울시 영세 여행사 긴급 생존자금 지원	0	1,500	1,500	신규
서울형 안심MICE 모델 구축	0	400	400	신규
재무활동	0	92	92	
여유자금 예치금	0	92	92	
행정운영경비	0	10	10	
기금 관리비	0	10	10	

<서울관광플라자 계정 지출 세부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0년	2021년	증감	비교
합 계	0	5,086	5,086	
재무활동	0	5,086	5,086	
예탁금	0	5,000	5,000	
예치금		86	86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일반회계로 추진 가능한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이 기금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는 위기에 빠진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5차에 걸쳐 지원금 사업을 실시했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서울관광진흥기금 전출금을 편성해 추가로 여행업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코로나19 이후, 서울 관광·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현황 〉

(1차)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3.~7.)	: 974개사, 48.2억원
(2차) 서울형 **MICE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5.~11.)	: 318개사, 15.9억원
(3차)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5.~11.)	: 302개사, 14.8억원
(4차) 서울 **관광·MICE**(8개업종) **긴급생존자금** 지원('21.2.~4.)	: 1,145개, 11.4억원
(5차) 서울 관광 회복 도약 자금 지원('21.4.~진행 중)	: (목표)5,000개, 100억원

○ 지난 5차례 사업은 도산 위기에 처한 여행사들에 생존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이번 기금 편성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여행사 중 200개사를 선정해 최대 1천만원씩을 지원하여 관광객 유치사업에 활용하고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게 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여행업 붕괴가 관광산업의 생태계 위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1]에서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의 용도로 관광업계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이 서울 관광산업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금 편성의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또한 '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서울시 영세 여행사 긴급 생존**

1)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업계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 비용**

자금 지원으로 편성했던 15억원을 지난 2월 4차 지원사업에 소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재차 기금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문제임.

○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 속에서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의 장점을 활용해 서울시가 발빠른 대처를 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지만,

되도록 일반회계로 사업을 편성하도록 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코로나19를 사유로 유사 사업을 반복적으로 편성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금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한 살펴볼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